

AE0기업 대상 수입세액정산제도 · 종합심사 비교

신한관세법인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신한관세법인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복제 · 전송 ·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신한관세법인

■ 담당 관세사

서영진 상무(wedin8@shcs.kr)

이화영 팀장(hylee@shcs.kr)

컨설팅 본부 대표전화 (02-3448-1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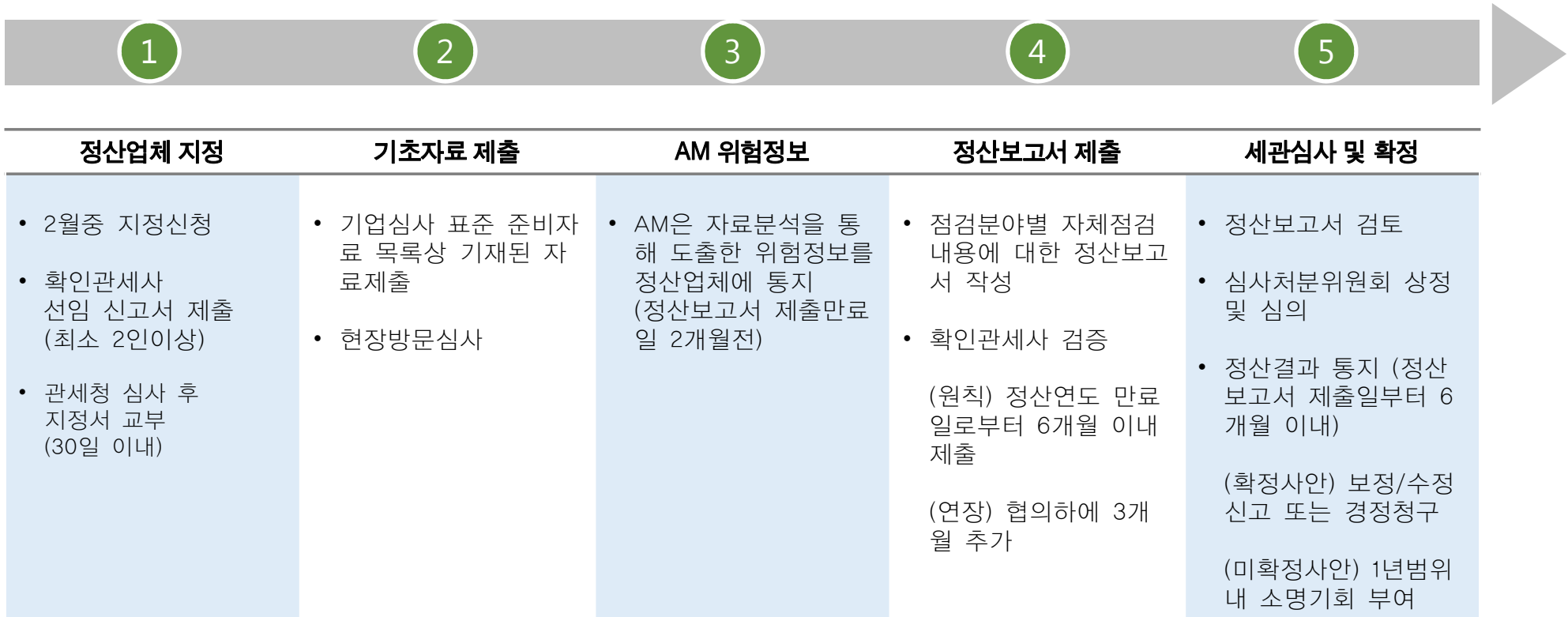
정기 수입세액정산제도란

수입부문 AEO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검증하여 세액을 조기에 확정하는 제도임

정산업체 요건	관세청은 정산업체가 아래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함 1) AEO 업체중에서도 수입부문 공인 대상 여부 2) 최근 2년 이내에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이상 받았는지 여부 3) 관세법 등의 위반혐의로 세관조사 진행여부 4) 기타 납세협력의무 위반행위 여부
정산대상기간	직전 1회계연도 (예, 12월 결산법인이 18년 정산제도 이용시, 17년1월1일~17년12월31일 실적이 정산대상에 해당)
확인 관세사	최소 2인 이상의 확인관세사가 정산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검증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함
근거규정	관세법 제38조 제3항 (자율심사)

수입세액정산제도 운영절차

정산업체의 자체심사, 확인관세사의 검토 및 세관의 심사 과정은 아래의 일정으로 운영됨 (약 6~9개월 소요)



점검분야

세액정산 점검 6대분야는 관세평가, 품목분류(세율), 외환거래, 감면, 환급, 보세공장임

1.1.

과세가격

- 실제지급금액의 적정성
- 로열티, 개발비, 수수료 등 가산금액 가산여부
- 무환물품 과세가격 적정성
- 잠정/확정가산율

1.2.

이전가격

- TP 결정방법
-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 동종업종 비교대상업체 이익률 비교
- TP와 수입가격 비교

2.

품목분류 세율

- 동일물품 상이세번 신고 (세율차이 있는 품목)
- ITA 세율 적용 적정성
- 고세율 물품을 저세율 물품으로 신고

3.

외환거래

- 기간초과지급
- 3가지급 신고 누락
- 상계신고 누락
- 자본거래신고 누락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점검분야

세액정산 점검 6대분야는 관세평가, 품목분류(세율), 외환거래, 감면, 환급, 보세공장임

4.

관세감면

- 관세감면대상 적정성
- 관세감면요건 충족여부
- 감면을 적정성
- 감면대상 과세가격
- 사후관리 이행여부

5.

내국세

- 개소세 부과대상 신고
- 내국세 감면 적정성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가 대상)

6.

관세환급

-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 대체사용 원재료 인정여부
- 소요량산정방법 적정성
- 부산물 공제율
- 세율별 환급비율제한

7.

보세공장

- 보세공장 제조물품 국내반입시 관세평가
- 무상공급 원재료 생산지원비용, 개발비 등 누락
-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신한관세법인의 강점

분야별 주요실적

저희
신한관세법인은
30여개의
다국적기업,
제조기업 등에게
법인/기획/종합심사
자문을 제공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세평가

- 다국적 의료기 회사 이전가격 적정성 자문
- 다국적 철강 회사 이전가격 검토
- 다국적 패션업체 계열사간 수수료 관세평가 자문
- 산업용 가스 유통 회사 수수료 관세평가 자문
- 관세평가교육모듈 번역 용역 외 다수

품목분류

- 의료기기, 반도체 검사 장비 등 품목분류 자문
- 화학 시약 전문회사 품목분류 자문
- PCB 검사기기 회사 연간 품목분류 자문
- 전자칠판, 스마트 카드 등 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자문
- 소재에서부터 상품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군의 1,000여 고객사에 게 통관 용역 제공

외환거래

- 해외법인청산 관련 외환자문 수행
- 통신 대기업 외환 자문 연간 제공
- 국내 대기업 대상 외환교육 수행
- 자동차 부분품 유통기업 제 3자지급 신고 외환 자문 수행
- 해외직접투자 미이행 건에 대한 외환자문

관세환급

- 전자부품/축전지 제조 회사 관세환급 시스템 구축 자문 (ERP 연계)
- 전자부품, 전자기기, 비철금속 산업군 대상 관세환급 구축 자문
- 제약회사 관세환급 사전진단 자문
- PCB 제조업체 관세환급 기획심사 대리
- 축전지/전자기기/생활용품/제약품 등 고객사에 환급 신청 대리 용역 다수 제공

수입세액정산제도 장단점

장점

관세추징 불확실성 제거	1년 단위로 세액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향후 관세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됨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
매입세액 공제	정산 결과 부족세액이 확정되어 보정·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가산세 부담경감	1년 단위로 정산을 진행하므로 가산세 부담이 경감됨 (5년 대비) 신고 불이행 가산세율 경감 적용 가능 (10% → 8~9%)
관세조사 면제	정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면제됨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
사전협의	사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세관심사팀과 사전협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어 과세/비과세 입장에 대한 상호간 이해도가 높아져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짐
자체평가서 제출의무 면제	수입부문 이외의 전 부문(수출, 물류부문)에 대한 정기 자체평가서 제출이 면제됨

단점

정기점검부담	1년 단위로 자체 점검을 통해 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관세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음
추가업무	세액정산을 담당할 전담 직원을 지정함에 따라 인건비가 발생됨
컨설팅 비용발생	최소 2인 이상의 확인관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컨설팅 비용이 발생함
AEO 공인부문 약화	(자료제출여부 불확실성 증대) 매년 1회 이루어지던 자체평가서 제출 의무가 생략되었으나 여전히 AM이 정보제공 요청 시에는 유지 및 현행화에 대한 자료 제공 의무가 있음 (AEO 공인부문 관리 소홀 가능성) 자체평가서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AEO 기업에서는 공인부문 유지 및 현행화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높음 (종합심사 수검시 어려움)

수입세액정산제도 VS 종합심사제도

	수입세액정산제도 활용시	종합심사 (수입세액정산제도 미활용)	비고
자료제출 대상기간	정산대상기간(1회계연도)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참고) 확정사안은 정산대상기간 이전의 실적에도 적용하여 수정신고 진행	4~5년간 심사대상기간 해당자료 제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기업심사 표준자료 목록표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 - (정산) 정산대상기간 이전 기간의 실적에 대해서 AM이 정보제공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 필요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정산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됨 (매입세액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이 제공한 위험정보와 관련한 사안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됨 -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된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안됨 	
현장방문	위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심사 진행 (3~5일/수회)	-	세액부문 위험분석을 위해 현장 방문함
실지심사	공인부문 종합심사를 위하여 실지심사를 진행함 (1~2주, 상대적 기간 단축)	공인부문과 통관적법성 부문 심사를 위해 실지심사 진행함 (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심사방향이 과거에 비해 통관적법성에 집중하는 것이 최근 추세임 - 수입세액정산제도를 활용하여도 공인부문에 대한 종합심사 실지심사는 이루어짐
검토분야	수입세액부문을 점검하여 정산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됨	수입세액부문뿐 아니라 요건 등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해 심사(검토)를 함	AM이 요청하는 경우 통관적법성에 대한 자료 검토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음

(‘18년 수입세액정산제도 활용 여부에 따른 비교)